

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(정원의 총수) 제1호 내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본 청 : 977명
2. 의회사무처 : 64명
3. 직속기관 : 1,003명
4. 사업소 : 296명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감축정원에 따른 경과조치)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조례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③(한시정원) 사업소 정원중 31명은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④(다른조례의 개정) 충청북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(사무직원의 정수)중 "65"명을 "64명"으로 한다.

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2조(정원의 총수) 제2호 의회사무처 59명을 64명으로 한다.

부 칙

제4항 "제4조"(사무직원의 정수)중 "65명"을 "64명으로 한다.